

**KOREN 연구협력 포럼 운영규정**

**KOREN 연구협력 포럼**

# KOREN 연구협력 포럼 운영규정(안)

2012.12.21. 제정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명칭)

- ① 본 포럼은 “KOREN 연구협력 포럼(이하 “KOREN 포럼”이라 한다)”이라 한다.
- ② KOREN 연구협력 포럼의 영문 표기는 “KOREN FORUM”이라 표기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KOREN 포럼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KOREN 포럼”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3 조 (용어정의)

- ① “미래네트워크 연구시험망(이하“KOREN”이라 한다)”이라 함은 미래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검증하고, 미래네트워크 연구시험망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선도하는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말한다.
- ② “KOREN 사업”이라 함은 국제연구망과의 연동을 포함하는 KOREN의 구축·운영과 이용 활성화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③ “KOREN 연회비”라 함은 KOREN 정/준회원이 가입자 구간의 회선을 제공받으며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 4 조 (KOREN 포럼 목적)** KOREN 포럼은 KOREN을 이용한 연구 및 이용 활성화와 국내외 관련 학술행사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국내 첨단 IT 및 망 응용기술의 연구, 개발, 시험, 검증을 촉진하며, 연구망관련 국제 활동에서 한국의 이용기관을 대표하고 국내정보통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활동 및 역할)** KOREN 포럼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과 역할을 수행한다.

1. KOREN을 활용한 연구, 개발, 시험, 검증 활동
2. APAN, APII 망 및 TEIN 등 국제연구망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 활동
3. 망 관련 선도기술의 연구, 개발, 시험, 검증 및 기술 이전
4. 관련 분과위원회 및 연구반 운영
5. APAN 등 국제연구망 이용자 컨소시엄의 한국의 이용기관 대표로서의 역할 수행
6. 관련 분야에 대한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 7. KOREN 포럼 홈 페이지를 통한 정보교류
- 8. 기타 본 KOREN 포럼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및 역할

## 제 2 장 회원

**제 6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KOREN 포럼 회원은 KOREN 이용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 ① 정회원 기관 : 연회비를 납부하고, KOREN에 접속하는 일반이용기관
- ② 준회원 기관 : 연회비를 납부하고, 당해연도 신규로 KOREN을 이용하는 기관
- ③ 특별회원 기관 : KOREN 지역접속점을 제공하며,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기관 및 동사업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및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하여 회선을 이용하는 기관
- ④ 시험기관 : 중소기업 및 학회 등 기관에서 연구·시험·검증·행사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1개월 이내)동안 KOREN을 이용하는 기관
- ⑤ 개인회원 : KOREN 망 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회원으로로서, KOREN VPN 접속 ID를 부여받아, KOREN 자원을 이용하는 회원

### 제 7 조 (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KOREN 포럼 활동 및 운영에 참여하며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 ② 회원은 총회, 해당분과위원회 및 해당 연구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무를 진다.

- 1. KOREN 포럼 운영규정 준수
-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준수
- 3. KOREN 포럼의 활동 및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제반 활동에 협조할 의무
- 4. 사업체의 명칭, 대표자, 사무소 또는 사업의 휴·폐업 등 중요 변경사항의 신고의무

### 제 9 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KOREN 포럼 사무국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 1. KOREN 포럼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KOREN 포럼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 3. 회원인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한 경우

4. KOREN 포럼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명을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③ 회원이 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 10 조 (회비)** KOREN 포럼의 회비는 연회비 및 특별회비(후원금)으로 구분하며, KOREN 포럼은 KOREN 이용규정에서 정한 연회비를 징수한다.

### 제 3 장 임원

**제 11 조 (임원)** 본 KOREN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의장
2. 부의장 2인 이하
3. 총무
4. 감사 2인 이하

**제 12 조 (임원의 선임)**

- ① KOREN 포럼 의장은 총회의 의결로써 선임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출한다.
- ② 부의장, 총무,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재적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출한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

- ① KOREN 포럼 의장은 KOREN 포럼을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KOREN 포럼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의장은 총회 의결에 따라 중임이 가능하고 의장을 제외한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중임할 수 있다.
- ④ 임원의 임기가 총회/운영위원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총회/운영위원회의 개최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 ⑤ 임원은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부의할 안건 및 KOREN 포럼의 일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전 논의할 수 있다.

**제 14 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KOREN 포럼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
2. KOREN 포럼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부정, 불미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업무

3. 제2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업무

### 제 15 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운영위원회에서 재적 회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1. KOREN 포럼의 운영규정이나 총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KOREN 포럼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KOREN 포럼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당 임원은 KOREN 포럼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제 4 장 총회

### 제 16 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2.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
3.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④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대리인, 서면, 전자우편 또는 화상회의 등으로 의장에게 위임한 경우 출석에 갈음한 것으로 본다.

### 제 17 조 (총회 의결방법)

① 총회는 제6조에서 정한 KOREN 포럼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회원만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본인에 관한 사항의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KOREN 포럼 활동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KOREN 포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경우

### 제 18 조 (총회 의결사항)

① 총회는 본 KOREN 포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한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의장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KOREN 포럼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4. 사무국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
  5. KOREN 포럼 해산결의에 관한 사항
  6. 의장이 부의한 사항 및 그밖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7. 기타 KOREN 포럼의 목적에 부의하는 사항
- ② 총회는 KOREN 포럼 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 19 조 (회의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회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재적 회원 수 및 출석한 회원 수
  3. 의결사항
  4. 의사의 경과와 발언요지
- ② KOREN 포럼은 의사록을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 5 장 기구

**제 20 조 (기구)** KOREN 포럼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구반 및 사무국을 둔다.

### 제 21 조 (운영위원회)

- ① 제5조 KOREN 포럼 활동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제5조의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Committee, Task Force) 및 연구반(Study Group)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임원, 분과위원회 및 연구반 반장을 포함한 25인 이하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제18조2항의 규정에 의해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KOREN 포럼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집행한다.
- 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한다.

**제 22 조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회원의 가입, 제명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4. 활동 계획·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KOREN 포럼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 및 연구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사무국과 지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10. 주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KOREN 포럼 활동에 관한 주요사항

### **제 23 조 (운영위원회 의결방법)**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및 사안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화상회의 등으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결의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준수 한다.

### **제 24 조 (분과위원회 및 연구반)**

- ① 분과위원회는 KOREN 포럼의 행정적인 사항, 정책·전략 및 향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회원 간 워크숍과 같은 협력활동 등 학술적 연구외의 활동을 위해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한다.
- ② 연구반은 KOREN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연구·학술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이다.

### **제 25 조 (분과위원회 및 연구반의 구성)**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 ① 분과위원회 및 연구반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 분과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연구반 반장은 해당 연구반의 연구반장이 되며 연구반 활동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④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연구반 연구반장의 임기는 1년이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중임할 수 있다.

### **제 26 조 (사무국)**

- ① 운영위원회는 제22조 9호의 규정에 따라 KOREN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1. 각종 회의의 운영 및 지원
2. 회원가입 및 탈회 관련 업무
3. KOREN 포럼의 회계 및 사무관리
4. 홈페이지 운영 및 KOREN 포럼의 공식적인 대외 창구역할
5. 기타 KOREN 포럼 운영에 필요한 부대업무 등

③ KOREN 포럼은 필요시 예산 범위 내에서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제반실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담당한다.

⑤ 사무국의 복무규정, 여비규정, 인사규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국을 담당한 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6 장 회계 및 사무관리

제 27 조 (회계 및 사업년도) 본 KOREN 포럼의 회계연도와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28 조 (운영재원)

① KOREN 포럼의 재정은 KOREN 연회비 및 기타수입과 필요시 특별 회비로 충당한다.

### 제 29 조 (회계 및 사무관리)

① KOREN 포럼의 사업집행 및 정산은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KOREN 포럼의 회계 및 사무관리는 사무국에서 처리한다.

③ 사무국은 KOREN 포럼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다.

## 제 7 장 보칙

제 30 조 (제규정) 이 규정에 없는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KOREN 포럼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KOREN 포럼 창립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시행일) 초대 사무국은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별표 1> 미래네트워크연구시험망(KOREN) 연회비

대역폭 \ 구분	정회원/준회원
10Gbps 이하	300만원
10Gbps 초과	500만원

※ 특별회원, 개인회원, 시험기관의 연회비는 면제

※ 중소기업일 경우 연회비의 70% 할인을 적용

<별표 2> KOREN 연구협력 파트너 KOREN 포럼 조직도

